

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의 안
번 호

제2979호

유만희 의원 (국민의힘, 강남구4)

☐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유만희 의원입니다.

☐ 본 의원 외 32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,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
☐ 최근 고령화, 출산·육아 환경 변화,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 요구 확대 등 사회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, 조례상 음수대 설치 대상 외에도 장애인·고령자·임산부·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계층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

☐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음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.

- 주요 내용은 개정안 제6조 제3항을 신설하여 ‘장애인·고령자·임산부·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다’는 내용을 명시한 것입니다.
-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현명한 판단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,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음수대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-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